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87
------------	------

발의연월일 : 2016. 11. 15.

발 의 자 : 김기선 · 정성호 · 함진규  
김성태 · 박성중 · 이종구  
박덕흠 · 김규환 · 송희경  
이명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고,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입점상인에게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징수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6까지 및 제44조의2 신설).

## 주요내용

- 가.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대규모점포등에서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명확화 함(안 제12조).
- 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제한하며, 해당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 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입점 상인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열람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 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함(안 제12조의5 신설).
- 마.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입점상인(入店商人)”을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로, “동의”를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을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매장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나 공사,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5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4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의6(관리규정)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규정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그 일시·목적 및 내용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현황, 업무의 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 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의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의3.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2의4.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공개한 자

2의5.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 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의6.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의7. 제1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 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2의8.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계약체결방식과 계약서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생 략)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가</u>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생 략)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u>입점상인</u>(入店商人) 3분          의 2 이상이 <u>동의</u>하여 설         립한 「민법」 또는 「상          법」에 따른 법인</p>	<p>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자(이하 “<u>대규모점포등관리자</u>”라 한다)-----          -----.</p> <p>1. (현행과 같음)          2. -----          -----          -----          -----          가. <u>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u>  <u>(入店)하여 상시 영업을</u>  <u>하는 상인</u>(이하 “<u>입점상인</u>”이라 한다)          -----<u>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u>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나. ~ 라.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생략)

### <설설>

### <설>

나. ~ 라. (현행과 같음)

### ③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는-----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는 입점 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  
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  
을 말하며, 매장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  
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  
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  
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  
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  
여 위탁관리나 공사,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입찰방식  
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5  
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4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할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  
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신 설>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대규모점포등관  
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  
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  
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의6(관리규정)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신 설>

	<p><u>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해야 한다.</u></p> <p><u>② 관리규정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③ 시·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u></p>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p> <p>-----</p> <p>-둘 수 있다.</p>

1. ~ 3. (생략)

<신설>

② ~ ⑦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

현황 점검·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그 일시·목적 및 내용을 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현황, 업무의 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 -----  
-----  
-----.

1. •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2의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u>
<u>&lt;신 설&gt;</u>	<u>2의3.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u>
<u>&lt;신 설&gt;</u>	<u>2의4.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u>
<u>&lt;신 설&gt;</u>	<u>2의5.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u>
<u>&lt;신 설&gt;</u>	<u>2의6.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u>
<u>&lt;신 설&gt;</u>	<u>2의7. 제1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u>
<u>&lt;신 설&gt;</u>	<u>2의8.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u>
3. ~ 6. (생략)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u>	3. ~ 6.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u>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정례-----  
-----  
-----  
-----  
-----.  
-----.